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04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정동영·김우영·이정헌

노종면 • 윤준병 • 황정아

박홍배 · 황명선 · 윤종군

민형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 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심사한다는 이유로 방송사 시사·보도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제재하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음. 이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보수가 장관의 보수를 넘어서는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목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보수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 조).

법률 제 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공공성 및 공정성을"을 "공공성을"로 하고, 같은 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의 보수는 위원장의 보수보다 낮은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장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심의위원장의 보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
치 등) ① 방송 내용의 <u>공공성</u>	치 등) ① <u>공공성</u>
<u>및 공정성을</u> 보장하고 정보통	<u> </u>
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	
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	
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	4
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u><단서 신설></u>	
	위원장의 보수는 위원장의 보
	수보다 낮은 금액으로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